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3일,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20.) 상정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의원)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 등을 통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이나 산림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관할구역의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교육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1)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배경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제를 통합하고 단일 법체계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내용을 분리·이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산림재난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 관리 정책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산림 및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피해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수 있고, 최근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림재난이 확대되고 있으나, 재난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분야의 「산림보호법」으로는 복잡 다기화되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전인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인하여 역대 1위 규모의 산림피해(103,876ha)와 183명의 인명피해, 1조 818억원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였음.

이에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참고로, 현재까지 총 26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3. 조문별 검토의견

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예정법률에는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련 사고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현행법은 산불 또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대피를 실시하는 경우 각 재난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의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수립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재

난 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등에 따르고 있음.

그러나 2022년부터 현재(2025. 6.)까지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총 50명(산불 35명, 산사태 15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림재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대피를 위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을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됨.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범위 확대

시행예정법률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2024년말 기준)까지 31,345개소 지역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음.

토지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사방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권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바,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림과 연접한 토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매수·교환의 범위를 토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의 매수·교환의 범위를 산지에서 ‘토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행예정법률 조문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단원 등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산불 진화의 초기 지휘권자이자 대피명령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예정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의무를 추가하기보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에 산불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